

학교우유급식시장과 공정거래법의 골레

배 정 식
본회 상무



학교우유급식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 낙농산업 기반유지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실시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은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왜 그럴까.

먼저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건강증진 측면이다. 현재 학교우유급식율은 53% 수준으로 절반에 머물러 있고, 지역별, 초중고별 편차도 심한 편이다. 우리와 식생활이 유사한 일본은 90% 이상이다. 그 이유는 일반급식과 우유급식의 분리실시에 있다.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처음부터 우유급식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급식은 교육부가 우유급식은 농식품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다. 해당 부처간 공조체계 미흡도 한몫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 낙농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학교우유급식물량은 전체 생산량 기준 약 5~6% 수준인 연간 약 13만톤 가량된다. 낙농산업 기반유지 차원에서는 분명 일조하고 있는 게 맞다. 그러나 이 또한 의문이다. 유업계는 우유를 팔아도 남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학교우유급식은 시중판매가격이 850원(200ml)인 상황에서 2~3백원대

덤핑입찰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을 위해 방학기간 동안 떠안게 되는 재고부담은 별개문제다.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 학교우유급식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 무상급식지원단가(현재 430원)를 기준으로 한 고정단가제가 공정위의 담합조사 이후 무너졌다. 무상급식단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방학동안의 재고부담을 안으면서 학교우유급식시장에 과감히 올린 할 유업체는 전무하다. 유업체가 학교우유급식에 등한시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에서 지난 2010년 우유가격 담합조사 당시 낙농진흥회를 방문 학교우유급식과 관련 고정단가 준수 증거자료를 입수, 조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공정위 판결문에는 “학교우유 급식 가격이 시중 판매되고 있는 우유가격 대비 약 50% 정도로서 영업수익이 거의 없어 부당이득이 크지 않으며, 농식품부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유 및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공정위조차도 수익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모 유업체가 학교우유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출혈 덤핑입찰이 결국 유업체의 경영압박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수가 많은 도시지역이 이 정도면 농촌지역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결국 유업체는 우유급식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생산

농가의 생산량을 줄이는 쪽으로 부담을 전가시킨 것이다. 우유급식시장이 현재와 같이 계속 이어질 경우 최종 부담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로 귀결되는 모순이 현재의 우유급식시장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최저가 입찰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정부가 부당염매를 조장하고 도농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시간을 늦춰서는 낙농산업과 학교우유급식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학교우유급식과 관련한 낙농진흥법 개정으로 명확한 법적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농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 행정지도는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의 경우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 소매가격의 경쟁적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도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행위 인가 신청을 통해 고정가격제하의 공동납품제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무튼 학교우유급식시장이 공정거래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낙농산업 기반유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10월 예정으로 추진 중인 학교우유급식 국회토론회가 그 단초를 제공해주길 고대해본다. 